부동산학개론

1. 부동산학의 기본원리

(1) 기본원리

1) 기초분야

- 부동산 결정분야(실무): 부동산 투자.금융.개발.정책

- 부동산 결정지원분야(실무): 부동산 마케팅.관리.평가.상담

- 부동산학의 기초분야(이론): 부동산의 특성, 부동산법, 도시지역, 부동산 시장.세금, 금융수학

2) 부동산학의 지도이념

- 일반이념 : 효율성(토지의 치유효이용), 형평성(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), 합법성

- 지도이념 :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(기술적 측면), 효율적 관리(경제적 측면), 공익과 사익의 조화

3) 부동산 활동 2대 요소

- 부동산 결정(3단계): 목적 설정 > 자료의 수집.분석.판단 > 행동방안의 모색

- 부동산 실행

- 부동산 활동의 분류 : 소유활동(최유효이용의 원칙), 거래활동(거래질서 확립), 부동산 정책 및 행정활동

- 활동 주체에 따른 부동산 활동
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세분류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| 부동산임대업 | 주거용/비주거용 건물임대업 |
| | | | 기타 부동산임대업 |
| | |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| 주거용/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|
| 부동산업 | | |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|
| |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| 부동산 관리업 | 주거용/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|
| | | 부동산 중개 및 |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|
| | | 감정평가업 | 부동산 감정평가업 |

(2)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

1) 부동산의 개념

| | | 공학적 측면 : 부동산의 설계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| 유형적측면 | 자연적 측면 : 지질, 지형 | 기술적 개념 | |
| 부동산 | | 물리적 측면 : 건축자재 | | 복합개념 |
| | 고성 보다 | 경제적 측면 : 경제, 경영, 사회, 심리, 인문지리 | - 경제적 개념 | |
| | 무형적 측면 | 법률적 측면 : 사법, 공법, 행정, 정치, 규범 | - 법률적 개념 | |

2)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

| 3대 측면 | 구분 | 부동산 | 동산 |
|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1. 기술적 | 위치 | 고정성(비이동성) | 유동성(이동성) |
| 측면 | 용도 | 용도의 다양성 | 용도의 한정성 |

| 2. 경제적 | 가치 | 일반적으로 크다(구매기간 장기) | 일반적으로 작다(구매기간 단기)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시장 | 추상적 시장(불완전경쟁시장) | 구체적 시장 (완전경쟁시장 가능) | |
| 측면 | 가격 | 균형가격 불성립(1물1가 원칙 배제) | 균형가격 성립(1물1가 원칙 적용) | |
| | 공시의 원칙 |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,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| | |
| | 응지의 현식 원칙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은 | | 다르나 이 원칙이 적용됨에는 차이가 없다. | |
| = | 공시방법 | 등기 | 점유 | |
| 3. 법률적 | 공신력 | 불인정 | 인정(선의취득) | |
| 측면 | 취득시효 | 20년(등기 10년) | 10년(선의취득 5년) | |
| | 무주물 소유 | 국유 | 선점자 | |
| | 권리설정 | 질권 설정할 수 없다. | 유치권.질권 설정할 수 있다. | |

3) 부동산의 분류(용어)

- 획지 : 행정적.법률적.물리적.자연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
- 건부감가 : (건부지평가액 < 나지평가액)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 제약분을 부지가격에 감가하는 것을 말함 (반대 : 건부증가 - 건축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)
- 소지(素地):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
- 공한지(空閑地): 도시내의 토지 중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(주로 투기목적)
- 후보지 : 택지.농지.임지 지역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되는 용도지역 내의 토지 (예; 농지→택지지역)
- 이행지 : 동일용도적 지역 내의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(예; 택지지역 내 공업지→주택지)
- 빈지(濱地):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
- 법지(法地):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(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음)

| 구분 | 포락지 | 법지 | 빈지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등기부 | 존재 | 존재 | 부존재 |
| 소유권 | 불인정 | 인정 | 불인정 |
| 사용 실익 | 없음 | 없 음 | 있음 |

(3) 부동산의 특성

- 1) 토지의 자연적 특성
 - 부동성(지리적 위치의 고정성, 비이동성): 국지화 지역적 세분, 추상적 시장, 외부효과 발생
 - 영속성(불변성, 비소모성, 비소멸성, 불괴성): 물리적 감가상각 배제, 임대차시장 발달 근거, 가치보존력
 - 부증성(비생산성, 면적의 유한성, 수량의 고정성): 균형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음, 토지공개념, 집약적 이용, 수요자 경쟁
 - 개별성(비대체성, 비동질성, 이질성): 독점화, 개별분석 요구, 일물일가원칙 배제, 표준지선정 곤란
 - 인접성(연결성):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, 경계 문제 야기, 개발이익 사회환수 논리의 근거
 - 적재성, 가경성, 배양성, 지력성
- 2) 토지의 인문적 특성
 - 용도의 다양성 : 최유효이용원칙의 성립근거, 적지론의 근거
 - 병합.분할의 가능성 :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, 최유효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, 한정가격을 존재

- 사회적.경제적.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: 토지의 위치성
- 국토성, 지역성
- 3) 건물의 특성
 - 비영속성
 - 생산가능성
 - 동질성
 - 이동가능성
- 종속성

2. 부동산 경제론

(1) 수요와 공급이론

| TAN 669E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구분 | 수 요 | 공 급 | | |
| | <u>일정한 기간 동안</u>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추 | <u>일정한 기간 동안</u> 공급자가 판매능력을 갖 | | |
| | 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| 추고 재화/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| | |
| | (수요량 : 소비자가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 | (공급량 : 공급자가 특정 가격수준에서 판매 | | |
| 개 념 | 자 하는 최대수량) | 하고자 하는 최대수량) | | |
| | 1) <u>유량(Flow)</u> : 기간, 장기 ⇒ 신규주택정책(잉 | 과 질적 향상) | | |
| | <u>저량(Stock)</u> : 시점, 단기 ⇒ 기존주택정책(질적인 향상) | | | |
| | 2) 반드시 유효수요/공급일 것 3) 사전적 개념 | | | |
| 77 14 | <u>우하향</u> ⇒ 가격과 수량 : <u>반비례</u> | <u>우상향</u> ⇒ 가격과 수량 : <u>비례</u> | | |
| 곡 선 | ↘이유: 소득. 대체, 기회비용 | ↘이유: 비용증가산업 | | |
| | 1) <u>수요량의</u> 변화 | 1) <u>공급량</u> 의 변화 | | |
| 곡선 상 이동 | 2) 원인 : 당해 재화 <u>가격</u> | 2) 원인 : 당해 재화 <u>가격</u> | | |
| | 1) <u>수요</u> 의 변화 | 1) <u>공급</u> 의 변화 | | |
| 곡선 자체 | 2) 원인 : 소득, 연관재 가격, 기호, 미래에 대 | 2) 원인 : 기술, 요소가격, 연관재 가격, 공급 | | |
| 이동 | 한 기대, 인구, 부, 신용에 대한 유용서, 금리, | 자들의 미래 예상, 기업의 목표, 공급자 수, | | |
| | 세금, 규제 | 생산요소 보유량, 보조금, 금리, 세금, 규제 | | |

(2) 탄력성

- 1) 수요의 탄력성
 -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= | 수요량의 변화율/가격의 변화율 |
 - = | (수요량변동분ΔQ/원래수요량Q) / (가격변동분ΔP/원래의가격P) |
 -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 : = 0 → 중립재, > 0 → 정상재, < 0 → 열등재
- ③ 수요의 교차탄력성 : = $0 \to$ 독립재, > $0 \to$ 대체재, < $0 \to$ 보완재 (연관 상품 가격변화)
- 2) 공급의 탄력성
- 3)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

- ① 대체재 多 : 탄력적 ② 장기 : 탄력적, 단기 : 비탄력적
- ③ 용도전환이 용이 : 탄력적 ④ 주거용이 다른 용도 보다 탄력적
- ⑤ 부동산 수요보다 공급이 비탄력적 → 이유 : 공급이 장기, 내구재

(3)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

- 균형가격 :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가격

(4) 부동산 경기변동

- 1) 경기변동
 - ① 주기에 따른 분류
 - 키친파동(단기): 30~40개월 주기, 통화공급, 이자율, 기업재고 변동 등 연관
 - 쥬글라파동(중기): 8~10년, 일반경기순환의 대표적 파동, 기업의 설비투자 연관
 - 콘트라티에프파동(장기): 50~60년, 기술혁신과 연관
 - ② 건축순환
 - 쿠즈네츠파동 : 약 20년, 인구증가율 변동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동이 원인
 - 한센의 건축순환 : 약 17~18년, 주택수급의 시차가 원인
 - ③ 경기순환의 국면
 - 가장 일반적인 것이 번즈와 미첼의 4분법(호경기, 후퇴, 불경기, 회복)
- 2) 부동산 경기변동
 - ① 부동산경기의 측정지표
 - 일반경기: 생산량, 소득, 소비, 저축, 투자, 고용과 실업, 이자율, 물가, 재고, 수출입, 국제수지 등
 - 부동산경기 : 건축량, 거래량, 가격변동, 택지의 분양실적, 공가율과 임료수준, 주택금융 상태 등
 - ② 부동산경기의 내용
 - 협의 : 주택경기, 광의 : 협의+상업용 부동산 등의 건축경기, 최광의 : 광의+토지
 - ③ 부동산경기변동의 특징
 - 변동주기 : 일반경기변동보다 2배 정도 길다.
 - 변동진폭 : 일반경기변동보다 크다.
 - 변동의 비대칭 : 회복기간이 길고 후퇴기간이 짧다.
 - 변동의 시차적 관계 : 상업/공업용 건축경기는 일반경제 패턴과 유사,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경기와 반대
 - 주기 순환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않다.

(5) 거미집이론

- 거미집이론(Cob-web theory): 수요와 공급이론의 동태적 응용이론으로 특정재화시장이 불균형상태에서 균형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이 거미집모양 같다는 정리
 - ① 기본 가정:
 - 재화의 수요는 같은 기의 해당재화가격의 함수이다.
 - 재화의 공급은 전기의 해당재화가격의 함수이다.
 - 공급자가 현재의 시장임대료에만 반응한다.
 - ② 시장균형의 안정과 불안정 (그래프를 시계방향으로 계산)
 - 수렴형(안정적 균형): 수요의 가격탄력성 > 공급의 가격탄력성

- 발산형(불안정적 균형): 수요의 가격탄력성 < 공급의 가격탄력성
- 순환형 : 수요의 가격탄력성 = 공급의 가격탄력성

3. 부동산 시장론

(1) 부동산시장

- 1) 특성
 - 추상적 시장
 - 국지적 시장 :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(하위시장)존재
 -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(개별성): 일물일가 법칙 배제
 - 공급의 시차로 인한 수급조절의 곤란성 : 단기적으로 초과수요(공급)과 가격왜곡 발생
 - 거래의 은밀성(비공개성)
 - 매매기간의 장기성(단기거래 곤란성)
- 시장의 비조직화 : 하위시장으로 구성되기 때문
-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
- 토지이용의 외부성(외부효과): 주변환경에 영향 많이 받음 → 지역분석 필요
- 자금의 융통성(유용성)과 관계가 큼 : 금리인하 시 수요와 공급 증대
- 2) 토지시장
- 3) 주택시장
 - 주택수요 결정요인 : 인구변화, 소득변화, 주택가격, 관련재가격, 주택금융제도, 금리변동과 취득능력
- 주택공급 결정요인 : 주택가격, 비용, 융자금의 유용성, 다른 건축의 수익성

(2)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

- 효율적 시장 :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

| 효율적 시장 | 반영되는 정보 | 분석방법 | 초과이윤 | 정상이윤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약성 효율적 | 기기이 저나 | 기스저 비서 | 획득(X) (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| 4 E (C) |
| 시장 | 과거의 정보 | 기술적 분석 | 분석하면 획득이 가능) | 획득(O) |
| 준강성 효율적 | 고교다 저나 (기기(취계) | 71 H H H H | 회득(X) (미래의 정보를 | |
| 시장 | 공표된 정보(과거/현재) | 기본적 분석 | 분석하면 획득이 가능) | 획득(O) |
| 강성 효율적 | 공표된 정보 (과거/현재) 및 | 비서 브피O | 어떠친 거요에도 하드 보기노 | 対に(へ) |
| 시장 | 공표되지 않은 정보(미래) | 분석 불필요 | 어떠한 경우에도 획득 불가능 | 획득(O) |

- 어떤 시장(독과점 등)이라도 <u>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면</u> 할당효율적시장이다.
- 할당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,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가능하다.
- 부동산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 또는 부동산시장에 투기가 성립되는 이유 : <u>시장이 불완전하기때문이 아니라</u>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
-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동일 → 완전경쟁시장, 불완전경쟁시장

(3) 부동산 입지론

1) 농업입지론

- 지대 =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 (→ 수송비 절약이 지대)
- 작물.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곡선이 달라진다.
-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이용을 한다.
-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주체가 중심지와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.
- 2) 주거지의 입지선정
- 한계주거비용 = 한계교통비용 → 최적주거입지
- 한계주거비용 > 한계교통비용 → 외곽으로 이전
- 한계주거비용 < 한계교통비용 → 도심으로 이전
- 3) 상업지의 입지선정
 -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: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(상점가의 크기, 수)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, 두 도시의 인구의 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
 - → 구매지향비율(상거래 흡인력) = A도시 인구수/B도시 인구수 *(B도시까지 거리/A도시까지 거리)²
 - 허프의 확률적 상권모형 : 대도시에서 쇼핑패턴을 결정하는 확률모델
 -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: 점포입지 8원칙(양립성-인접 점포간에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등)
 -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: 도시의 분포와 정주체계를 규모의 경제와 운송비를 중심으로 설명
- 4) 공업지의 입지선정
 -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: 최소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입지(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최소인 지점)

(4) 지역경제기반분석

- 1) 입지계수 :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계수
- 2) 경제기반승수 : 지역사회 성장은 기반활동(지역 경계 바깥으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활동)에 달려 있다고 봄

(5) 도시내부구조이론

- 1) 동심원이론(버제스):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의 지구로 분화하면서 성장
 - 중심업무지구 > 천이지대 > 근로자 주택지대 > 중산층 주택지대 > 통근자 지대
- 2) 선형이론(호이트): 토지이용은 도로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부채꼴 모양과 같이 확장
 - 중심업무지대 > 도매경공업지구 > 저급주택지구 > 중급주택지구 > 고급주택지구
- 3) 다핵심이론(멕켄지):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몇 개의 이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됨

(6) 지대 및 지가이론

- 1) 차액지대설(리카도)
 - ① 지대원인 : 비옥도 차이 → 한계지 밖의 토지는 지대발생 안 함
- ② 지대의 기준 : 한계지
- 2) 위치지대설(튀넨)
- ① 지대원인 : 수송비 절약
- ② 도심근교 : 수송비(↓,↑) → 지대(↑↓), 집약적 토지이용

4. 부동산 정책론

- (1) 부동산문제 :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악화의 제 문제 (특히 토지 수요.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가상승, 국토이용의 문란, 양적.질적 주택공급의 문제, 환경파괴 등)
- 1) 특징
 - 악화성향, 비가역성, 지속성, 해결수단의 다양성, 복합성
- 2) 토지문제
- 3) 주택문제

(2) 부동산 정책

- 1) 부동산 정책과정
- 문제의 인지 > 정보의 수집 및 분석 > 대안의 작성 및 평가 > 대안의 선택 > 정책의 집행 > 정책의 평가
- 2) 정부의 시장개입
 - 정치적 기능 : 효율성, 형평성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 달성(예;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공급)
- 경제적 기능 :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(예; 외부효과의 제거)
- ※ 시장실패의 원인: 규모의 경제(비용체감), 독과점기업 존재, 외부효과 발생, 공공재의 존재,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

| 정(+)의 외부효과 (외부경제) | 구분 | 부(-)의 외부효과 (외부불경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고 | 1110 |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 |
| 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| 내용 | 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|
| 수요 증가(수요곡선을 우측/상향 이동) | 수요공급 | 공급 감소(공급곡선을 좌측/상향 이동시킴) |
| 주택가치(↑), 수급량(↑) | 가치.거래량 | 주택가치(↑) 균형량(↓) |
| 사적 비용 > 사회적 비용 | 비용(생산) | 사적 비용 < 사회적 비용 |
| 사적 편익 < 사회적 편익 | 편익(소비) | 사적 편익 > 사회적 편익 |
| 과소 소비 및 과소 생산 | 생산량 | 과다 소비 및 과다 생산 |
| 보조금 지급, 조세 경감, 행정규제의 완화, 개 | ΓII ‡ II |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중과나 환경부담 |
| 발이익환수 | 대책 | 금 부과, 지역지구제 |

3) 지역지구제

- ① 목적 :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/감소시킴 (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)
- ② 효과
- 단기적 효과 :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킴
- 장기적 효과 :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 주택 착공량을 증가시킴
- ③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: 특정지역 독점적 지위로 인한 자원의 부적정할당 문제, 추가적인 수익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(사전적 독점이 문제, 사후는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)
- ④ 지역지구제 보완하는 제도
 - 성과주의 지역지구제, 계획단위개발(PUD), 재정적 지역지구제, 개발권양도제(TDR), 인센티브 지역지구제

(3) 토지 정책

- ① 목표 : 투기억제/지가안정, 택지 지속적 공급/확대,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, 토지오용 방지 및 무용토지 활용
- ② 내용
 - 토지소유제도 : 소유권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전환, 국.공유지 처분중심에서 보전중심으로, 개발이익환 수를 통해 토지소유에서 오는 불평등 해소
 - 토지이용규제 : 토지이용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, 규제를 일원화
 - 토지개발: 민간토지개발주체 육성.강화,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능률적 연계, 토지개발사업 효율적 추진
 - 토지거래 : 지가안정과 투기억제,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적 자질 향상, 부동산권리분석사 제도도입
- ③ 토지정책수단
- 토지이용규제 : 부의 외부효과 장지에 역점 → 용도지역.지구제, 개발권양도제도(TDR), 토지구획규제
- 직접적 개입 : 이유 → 계획적 개발, 공공용지 확보, 개발이익 환수, 택지의 대량공급 방법 → 초과매수, 토지은행제도, 공영개발, 토지수용, 공공임대보유, 토지구획정리사업
- 간접적 개입: 토지시장과 결부된 경제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정(토지와 관련된 세금 감면/부과, 보조금 지급, 개발부담금 부과 등), 토지시장의 원활한 여건 조성 또는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제거 (토지 거래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체계 구축, 지적 및 등기를 통한 토지소유권의 명확한 설정, 토지 관련 정부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등)
- ④ 현행 토지정책
 - 토지취득.거래를 직접 제한 : 토지거래허가제, 농지취득자격증명제
 - 토지소유/거래로 인한 자본이득/불로소득 환수 : 개발부담금, 종합부동산세, 양도세, 비업무용토지제도 등
 - 전형적인 투기수단 탈법행위 금지 : 부동산실명제, 미등기전매금지, 등기의무화, 검인제도 등
 -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적발: 정부합동 부동산대책본부, 토지전산망, 투기예고지표, 투기단속반 등

(4) 토지공개념

- ① 내용
 - 토지 이용에 있어 공공복리를 우선
 -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함
 - 토지의 거래는 적정 면적과 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
 - 토지 이용이 자연환경의 보존에 유누가 없도록 함
 - 토지 이용이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
- ② 정책수단
 - 토지소유 관련 : 농지소유 상한제,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
 - 토지거래 관련: 검인계약서, 토지거래허가제, 농지취득자격증명제, 투기과열지구(분양권 전매제한), 투기지역(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), 부동산실거래가신고
 - 토지이용 관련 : 용도지역.지구.구역제
 - 개발이익환수제도: 개발부담금제도, 양도소득세, 부동산가격공시제도

(5) 주택정책

- ① 목표 : 양적.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확보, 쾌적한 주택의 확보
- ② 내용

- 공급확대방안 : 신규주택 건설촉진(싼 택지 공급, 주택생산성 증대, 건설주체의 역할 증대), 재고주택의 보 전과 개량
- 구매력 강화 방안 : 일반소득분포 개선, 주택규모분포 개선,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 실시, 사회임대주택 제도 실시, 주택비의 지원 및 보조, 세제상의 혜택
- 주거환경계획: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, 편리하고 효율적인/쾌적한/문화적 주거환경

(6) 임대주택정책

- 1) 임대료 규제정책
 - ① 의의 : 주택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(일종의 최고가격제도)
 - ② 목적 : 소득의 불균형적 배분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임대료를 일정 시점으로 동결
 - ③ 효과
 - 균형임대료보다 규제임대료가 낮을 경우, 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 회피, 임대부동산 질적 저하, 기존 임차 자 주거이동 저하, 초과 수요로 암시장 형성,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 등

2) 임대료 보조정책

- ① 의의 :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(또는 과세소득 공제)
- ② 목적 : 임대주택시장의 수요를 증대시켜 공급을 자극하는데 있음
- ③ 효과
-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→ 소비하는 임대주택 양을 증가시킴 → 효용도 증가, 다른 재화(정상재) 의 소비량도 증가

| | - 10 0-1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| 수요측 | 보조금 | | | |
| | 가격보조방식 | 소득보조방식 | 공급측 보조금 | | |
| | (집세보조) | (현금보조) | | | |
| | 주택의 상대가격을 낮춤 | 실질소득이 현금보조액 | 주택생산자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자금을 | | |
| 의의 | | 만큼 증가한 것과 동일 하므로 주택임차가구의 |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 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그을 증대 | | |
| | 의 주택소비를 증가 | 주택부담능력이 높아짐 | 시키는 효과 | | |
| | . 주택소비증대라는 정책 | | 단기 : 공급곡선이 수직, 아무 효과 없음 | | |
| 정책적 효과 | 역 무곡도미승대되는 중국 목표달성 측면에서 효과 | 소비자용 측면에서는 효 | 장기 : 주택생산비를 절감시켜 주택공급이 | | |
| | . ㄱㅛᆯᆼ ㄱᆫ에지 효ᆈ - 적 | 과적 | 증가하고 시장임대료가 하락하여 주택소비 | | |
| | Ä | | 증가 | | |

3) 공공주택정책

- ① 의의 :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
- ② 목적 : 저가주택의 손실에 대한 대체와 저가주택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
- ③ 효과 :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을 줌

(7) 여과과정

- 1) 개념
 - ① 하향여과 :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

② 상향여과 :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

2) 주거분리와 여과과정

① 주거분리 :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

② 여과과정에 의한 주거분리

(8)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

| | 분양가 규제(상한제, 연동제) | 분양가 자율화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초 점 | 규제분양가↑ < 시장분양가↑ | 신규분양가격의 상승 |
| | ① 이윤↓ → 신규공급↓, 공급자 파산 | ① 이윤증가 → 신규공급↑(대형주택) |
| 공급자 | ② 생산비용감소대안 강구 → ⑤ 질적수준↓ | ② 질적수준↑, 분양가 상승 |
| | © 외곽지역의 고층화, 스프롤현상 | 저소득층의 주택구입난 가중 |
| A 0.11 | ① 주택의 초과수요 발생 → 중고주택가격↑ | ① 중고주택 수요↑→ 중고주택 가격상승 |
| 수요자 | ② 전매차익 투기수요 → 분양주택 수요↑ | ② 실수요자 중심 |
| H H | ① 직접규제 | ① 간접규제 |
| 정 부 | ② 저소득계층 보호 | ② 시장기능 준용 |

(9)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

(10) 조세정책

- 1) 목적
- 부동산자원배분 , 소득재분배, 지가안정, 주택문제해결, 도시과밀방지
- 2) 재산세의 귀착
 -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 (조세의 귀착) → 수요.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음

| 타려서기 조네기차 | 수요 | 탄력적 | 수요자 부담↓, 공급자 부담↑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비탄력적 | 수요자 부담↑, 공급자 부담↓ |
| 탄력성과 조세귀착 | בק | 탄력적 | 공급자 부담↓, 수요자 부담↑ |
| | 공급 | 비탄력적 | 공급자 부담↑, 수요자 부담↓ |
| | 4.0 | 완전탄력적 | 공급자 전액 부담 |
| 저에 버드나는 것이 | 수요 | 완전비탄력적 | 수요자 전액 부담 |
| 전액 부담하는 경우 | 공급 | 완전탄력적 | 수요자 전액 부담 |
| | | 완전비탄력적 | 공급자 전액 부담 |

→ 가격의 탄력성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

5. 부동산 투자론

(1) 부동산 투자이론

1) 부동산 투자 : 미래의 현금수입과 현재의 현금지출을 교환하는 행위 (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)

- 2)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 특성
- 개별성, 공급의 한정성, 투자의 안전성, 투자소득의 발생, 토지의 영속성, 용도의 다양성, 위치와 효용
- 3) 부동산 투기
- 단기간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기대되는 개발가능성을 전제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
- 억제 정책 :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, 토지거래허가제 강화, 투기지역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, 부동산가격공시제도, 개발부담금 부과,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분양주택 전매금지

(2) 부동산 투자와 기초적 금융수학

- 1) 투자결정 주요 변수 : 경상비, 가격에 대한 대부비율(레버리지 비율), 유효총수익, 자산가치 상승률, 저당대부 이자율, 구입가격
- 2) 부동산투자 결정과정 : 투자목적 파악 > 투자환경 분석 > 비용편익 분석 > 투자의 타당성 판단 > 투자 결정
- 3)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

| 구분 | 개념 | 목적 | 수식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(<u>일시불의 내가계수</u>) |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 찾는 금액 | 기간 초 불입된 일시불에 대해 일정기간 후 원리금 합계를 구함 | (1+r) ⁿ |
| <u>일시불의 현재가치</u> (일시불의 현가계수) | 할인율이 r%일 때 n년 후의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? | 일정기간 후의 일시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액수 구함 | 1 (1+r) ⁿ |
|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(연금의 내가계수) |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 을 때 n년 후 달성되는 금액 | 매기간 일정액을 불입했을 때 기 간 말의 누적금액을 구함 | <u>(1+r)ⁿ -1</u> r |
| <u>감채기금계수</u> (상환기금계수) |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하는 액수 | 일정액을 기간 말에 만들기 위해 매기간마다 적립해야 하는 액수? | <u>r</u> (1+r) ⁿ -1 |
| 연금의 현가계수 | 이자율 r로 매년 1원씩 n년동 안 받게 될 연금의 일시불 | | 1-(1+r) ⁻ⁿ r |
| <u>저당상수</u> |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 | | r 1-(1+r) ⁻ⁿ |

- * 역수관계 : 일시불 내가 ↔ 일시불 현가, 연금의 내가 ↔ 감채기금계수, 연금의 현가계수 ↔ 저당상수
- 4) 잔금비율과 상환비율

 - ② 미상환원금 = 저당대부액 X 잔금비율 \rightarrow t시점의 잔금비율 = 미상환원금 / 저당대부액 미상환잔금 = 부채서비스액 X 연금현가(잔여기간)
 - ③ 상환비율 = <u>(1+r) ^t 1</u> (1+r)ⁿ - 1

상환비율 → 저당상수, 일시불 현가계수

④ 주택연금제도 → 감체기금계수

(3)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

1) 투자 위험 :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

- 위험의 유형 : 사업상의 위험, 금융적 위험, 법적 위험, 인플레이션 위험, 유동성 위험

2) 수익률 : 투하된 자본에 대한 산출의 비율

- 수익률의 종류: 기대수익률(내부수익률), 실현수익률, 요구수익률

3) 위험과 수익의 관계

- 요구수익률 = 무위험률 + 위험할증률 +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할증률

- 부동산의 투자가치 = 투자에 대한 예상 순수익 / 시장의 요구수익률

(4) 부동산 투자의 위험분석

1) 위험과 수익의 측정 : 수익성은 소득의 기대치를,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지표로 사용

- 변이계수(기대수익률 단위 당 위험) = 표준편차 / 기대수익률

(5)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

1) 자산3분법 : 투자의 안전성.수익성.환금성을 고려하여 부동산.유가증권(주식).예금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

2) 평균-분산결정법 : 동일한 위험을 갖는 투자안 중에서 가장 큰 기대수익을 갖는 투자안이, 동일한 기대수익을 갖는 투자안 중에서 가장 낮은 위험을 갖는 투자안이 지배한다는 원리

(6) 현금수지분석

1) 영업수지 계산

| | 단위당 예상임대료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Х | 임대단위수 | |
| = | 가능조소득 (PGI : Potential Gross Income) | |
| - | 공실 및 불량부채 | |
| + | 기타 소득 | |
| = | 유효조소득 (EGI : Effective Gross Income) | |
| - | 영업경비 (OE : Operation Expense) | 유지비, 관리비, 수수료, 재산세, 보험료, 광고비 |
| = | 순영업소득 (NOI : Net Operating Income) | |
| - | 부채서비스액 (DS : Debt Service) | = 대출총액 X 저당상수(전기간) |
| = | 세전현금수지 (BTCF : Brfor-Tax Cash Flow) | |
| - | 영업소득세 (TO : Taxes from Operation) | |
| = | 세후현금수지 (ATCF : After-Tax Cash Flow) | |

2) 지분복귀액 계산

| | 매도가격 (Selling Price) | 수익환원법중 직선법 사용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- | 매도경비 (Selling Expense) | |
| = | 순매도액 (Net Sales Proceeds) | |
| - | 미상환저당잔금 (Unpaid Mortgage Balance) | |

| = | 세전지분복귀액 (Before-Tax Equity Reversion)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- | 자본이득세 (Capital Gain Tax) | |
| = | 세후지분복귀액 (After-Tax Equity Reversion) | |

(7) 부동산투자분석기법

- 1) 전통적 투자분석기법
- 회수기간법
- 회계적 수익률법

2) 할인현금수지분석법(DCF법)

- 순현가법(NPV법) = 현금유입의 현가 현금유출의 현가 → NPV >= 0 이면 채택
- 내부수익률법(IRR법): 순현가(NPV)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
- 수익성지수법(PI법) =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/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\rightarrow PI > 1 이면 채택

순현가법과 내부수익율의 비교 (이론적 순현가가 우수함)

| 순현가법(NPV) | 비교 | 내부수익률법(IRR법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요구수익률 | 할인율(재투자율) | 내부수익률 |
| 0 | 부의 극대화 | X |
| 투자안 선택 가능 | 요구수익률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| 선택 불가능 |
| 항상 먼저 파악함 | 투자시 요구수익률 | 먼저 파악할 필요 없음 |
| 0 | 가치합산 원칙 적용 | X |

(8) 어림셈법

| 구분 | | 내용 | 수식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| 조소득승수 | 조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 | 총투자액/조소득 | |
| | ۸, ۵, ۵ |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| 총투자액/순영업소득 | |
| 승수법 | 순소득승수 | 배수(자본회수기간) | 중구시 귀/군 8 납포국 | |
| | 세전현금수지승수 |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배수 | 지분투자액/세전현금수지 | |
| | 세후현금수지승수 | 세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배수 | 지분투자액/세후현금수지 | |
| | 종합자본환원율 | 총투자엑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(종합수익률) | 순영업소득/총투자액 | |
| 수익률법 | 지분배당률 |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의 비율 | 세전현금수지/지분투자액 | |
| | 세후수익률 |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현금수지의 비율 | 세후현금수지/지분투자액 | |
| | 대부비율(LTV)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 비율 | | 부채잔금/부동산의 가치 | |
| | 부채비율 | (대부비율이 100%이면 부채비율은 무한대가 됨) | 저당대부액/지분투자액 | |
| 비율 | 부채감당률 |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| 순영업소득/부채서비스액 | |
| 분석법 | 분석법 채무불이행률 유효조소득의 영업경비.부채서비스액 감당 능력 | | (영업경비+DS)/유효조소득 | |
| | 총자산회전율 |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 | 조소득/부동산의 가치 | |
| | 영업경비비율 | 영업경비가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| 영업경비/조소득 | |

- 1) 어림셈법(승수법,수익률법)의 한계
-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은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 곤란

-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수지 변동 심할 시 사용 곤란
- 2) 비율분석법의 한계
 -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잘못으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.
 - 주어진 비율 자체만으로 투자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곤란
 - 동일한 투자대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

6. 부동산 금융론

(1) 부동산금융

1) 의의 : 일정한 부동산 자금을 확보하여 무주택서민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의 구입 및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특수금융

2) 부채금융

- 저당금융 : 차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대상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
- 신탁금융 :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받는 방법
- 주택상환사채 :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(기명식 보증사채)
- 자산담보부증권(ABS)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산을 담보로 ABS를 발행
- 프로젝트파이낸싱 : 기업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자체 수익성과 사업자산을 담보로 융자 또는 회사채 발행하여 자금조달하는 방법

3) 지분금융

- 부동산신디케이트 :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
- 조인트벤처 : 특정목적의 벤처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결합체
- 부동산투자신탁(REITs): 소액투자자에게 지분권을 판매하여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, 신탁, 조합
-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펀드): CR-REITs와 유사한 서류상의 회사인 부동산투자목적의 특수목적회사(SPC)를 통한 자본조달방법

4) 주택금융

- 주택소비금융(소비자금융): 주택 거래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주택자금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가계에 대한 금융
- 주택개발금융(공급자금융):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

5) 부동산금융의 원칙

- 자금의 확보 : 정부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금 유치 필요
- 대출금리의 책정 : 저소득층.중간계층을 위한 대출이므로 장기.저리에 안정적이어야 함
- 부동산 대출채권의 유동화 : 자금의 장기 고정화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화 필요
- 부동산 채권보전 : 신용보완책으로 여러 조치 필요 → 부동산부문으로 자금 유입 용이하게

(2) 부동산저당대출

1) 저당의 종류 : 재래적 저당, 정부지원 저당, 건축대부

| 구분 | 건축대부 | 저당대부 |
|----|------|------|
| | | |

| 대출기간 단기 (건축기간동안) | | 장기 (보통 10년 이상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이자율 상대적으로 높음 | | 상대적으로 낮음 |
| 자금의 제공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 | | 일시불로 전액 제공 |
| 자금의 상환방법 | 완공시 일시불로 상환 |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|

2) 저당대출의 위험

- 채무불이행 위험, 조기상환 위험, 금리 위험, 유동성 위험, 법적 위험

3) 할부상환저당대출에 따른 저당상환방법

-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(CPM; Constant Payment Mortgage loan)
 - 월 불입액(고정) = 원금상환액(체증) + 월이자액(체감)
 - 저당지불액(원리금지불액) = 대출금 X 저당상수
 - 이자지급액 = 융자잔고(미상환대출잔액) X 이자율
 - 원금상환액 = 저당지불액 이자지급액
- ②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(CAM; Constant Amortization Mortgage loan))
- 월 저당지불액(감소) = 월 원금상환액(균등) + 월 이자액(감소)
- 월 불입액(감소) = 원금상환액(균등) + 월이자액(감소)
- ③ 원리금체증식 저당대출(GPM; Graduated Payment Mortgage)
 - 월 저당지불액(감소) = 월 원금상환액(균등) + 월 이자액(감소)
 - 월 불입액(감소) = 원금상환액(균등) + 월이자액(감소)

4) 이자율 변동방법에 따른 저당대출의 분류

- ① 고정금리식 저당대출(FRM; Fixed Rate Mortgage)
- ② 변동금리식 저당대출
 - 대출금리 = 기준금리(3개월 CD금리 또는 6~12개월 COFIX금리) + 가산금리

(3) 저당의 유동화 제도

- 1) 저당시장 구조
 - ① 1차 저당시장 :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
 - ② 2차 저당시장 :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

2) 주택저당증권

- ① 이체증권(MPTS; mortgage pass-thru security) : 매월 단위 원금과 이자 수령
- ② 저당채권(MBB; mortgage-backed bond) : 투자자는 조기상환의 위험에서 벗어남
- ③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(MPTB; mortgage pay-thru bond) : MPTS+MBB 성격
- ④ 다계층저당채권(CMO;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) : 상이한 이자율 적용, 우선순위별 원금이체

저당담보증권의 종류와 특성

| | MBB | MPTs | МРТВ | СМО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① 채권 유형 | 채권형 | 지분형 | 혼합형 | 혼합형 |
| ② 저당권 보유 | 발행기관 | 투자자 | 발행기관 | 발행기관 |

| ③ 원리금수취권 | 발행기관 | 투자자 | 투자자 | 투자자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④ 만기전변제에 대한 책임 | 발행기관 | 투자자 | 투자자 | 투자자 |
| ⑤ 초과담보설정 | 예 | 아니오 | 예 | |
| ⑥ 콜방어(콜), 부외금융(부) | 콜 | 부 | | 콜, 부 |
| ⑦ 원금이체 | 아 전 | 직접 | 직접 | 우선순위 |

3)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

- ① 주택연금 가입요건
 - 부부기준 1주택(시가 9억원 이하)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(공동소유 시 연장자가 60세 이상)
- 확정기간방식은 연소자가 만55~74세. 노인복지주택 제외
- ② 적용금리 : 3개월 CD금리 + 1.1%
- ③ 가입비 및 연보증료 : 주택가격 2%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, 보증잔액의 연 0.5%를 매월 납부

(4) 공급자금융

1) 부동산투자신탁(REITs)

| 7.4 | 자기관리 | 위탁관리 | 기업구조조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부동산투자회사 | 부동산투자회사 | 부동산투자회사 |
| 업무 | 일반부 | 동산 투자 |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|
| 회사성립 | 국토교 | 통부 인가 | 국토교통부 인가(금감위 의견청취) |
| 설립주체 | | 발기인 | |
| 감독 | | 국토교통부.금감유 | 2 |
| 회사형 | 실체회사 | | 명목회사 |
| 설립시 자본금 | 10억원 이상 | ! | 5억원 이상 |
| 치지지보기 |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 | | |
| 최저자본금 |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 | | |
| 인당 주식한도 1인당 30% 이내 1인당 40% | | 1인당 40% 이내 | 제한 없음 |
| 주식공모 | 자본금 | 30% 이상 | 의무사항 아님(사모 가능) |
| 상장 | | 요건구비 후 즉시 | |
| TIALTA | 부동산 | 동산 70% 이상, | |
| 자산구성 | 부동산/부동산관련 | 기업구조조정부동산 70% 이상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80% 이상 | |
| 배당 | 배당 90% 이상 의무배당 | | 다 |
| 자금차입 | 자기자본 2배 내 원칙 | 자기자본 2배 이내 | |
| 회사존속 | 영속적 | 선택적 | 한시적 |

- 2) 부동산 신디케이션
- 3) 조인트벤처
- 4) 프로젝트 파이낸싱

| 차주 | 사업시행사 | 사업시행사 | 사업주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보 | 프로젝트의 수익 | 프로젝트의 수익 및 시행사/ 시공사의 보증 | 사업주의 모든 자산과 신용 |
| 상환재원 | 프로젝트의 기대현금흐름 | 분양수익금과 시행사 전 자산 | 사업주 전체의 재력 |
| 소구권행사 |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배제 |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행사, 시공사가 연대보증 및 책임인 수시 시공사에 소구권 행사 | 사업주 보증시 사업주에게 소 구권 행사 |
| 자금관리 | Escrow 계정에 의한 관리 | 분양관리신탁 등의 별도 계좌 | 차주의 임의관리 |
| 차입비용 | 기업금융에 비해 높음 | 담보대출에 비해 높음(시공사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) | 사업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|
| 사업성검토 | 수익발생 근거에 객관적 검증 및 시나리오별 검토 | 담보의 검토와 신용공여를 제 공하는 시공사의 신용도가 중 요하게 적용됨 | 담보위주의 대출로 사업성검 토는 절차상 요건 |
| 리스크배분 | 프로젝트 관련자간 배분 | 시공사가 리스크 대부분 부담 |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 |

5) 부동산펀드

(5)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제도

- 1) 국민주택기금
- 2) 주택할부금융
- 3)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
- 4) 신용보완제도
-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
- 주택건설보증(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): 주택분양보증, 주택임대보증, 하자보수보증
- 5) 비제도권 금융
- 전세제도
- 선분양제도
- 6) 입주자저축 :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, 주택청약종합저축

7.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

(1) 부동산 이용

- 1) 최유효이용
- 2) 토지이용의 구분
- 도시적 토지이용과 비도시적 토지이용
- 조방적 토지이용과 집약적 토지이용 : 집약도 = 노동이나 자본의 크기 / 토지(단위면적)
- 입지잉여 : 동일한 산업환경 내에서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같더라도 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 생기는 특별한 이익

- 입지경쟁
- 지가와 토지이용의 집약도
- 3) 지가구배 : 지가수준이 100% 입지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 낮아지는 정도
- 4) 도시스프롤(sprawl) 현상 :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이 무질서.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
- 5) 침입적 토지이용 : 기존의 이용주체가 새로운 因子의 침입으로 인해 새로운 이용주체로 변화하는 것
- 6) 직.주 분리와 직.주 접근
- 7) 한계지: 택지이용의 最遠方圈

(2) 부동산 관리

- 1) 부동산 관리 : 부동산의 취득.유지.보존과 그 운용에 관한 일체의 행위
- 2) 부동산 관리의 내용
- 토지의 기술적 관리 : 경계확정(경계표시, 측량), 사도의 방지(철조망), 경사지 대책(옹벽, 배수지 시설)
- 건물의 기술적 관리 : 위생관리, 설비관리, 보안관리, 보전관리
- 토지 경제적 관리 : 나지의 활용, 세금 감면
- 건물의 경제적 관리 : 임대건물의 손익분기점 파악, 회계관리, 인력관리
- 토지의 법률적 관리 : 권리관계의 조정, 토지도난 방지 대책, 법률적 이용가치 개선
- 건물의 법률적 관리 : 임대차예약/계약 및 기타 시설에 관한 계약, 권리의 보존 관리, 공법상 규제사항에 관한 관리
- 3) 부동산 관리방식
- 자가관리
- 위탁관리
- 혼합관리

(3) 부동산 개발

- 1) 부동산 개발 : 건축에 의한 개발, 조성에 의한 개발
- 2) 부동산 개발 과정

| 1. 구상단계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. 예비적 타당성분석 | |
| 3. 부지의 모색과 확보 | 부지 매입 |
| 4. 타당성 분석 | 실행가능성 분석 및 디자인 |
| 5. 금융 | |
| 6. 건설(택지조성) | |
| 7. 마케팅(분양) | |

3)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

| 분석유형 | | 개념 | 분석의 주요 구성요소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시 | 지역분석 | 개발사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| -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/비중 |
| 장 | 시작군석 | 있는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는 것 | - 경제기반(지역기반산업) 분석 |

| 분 | | | - 인구, 지역의 소득/고용수준, 교통체계 분석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_ 석 | | | - 지역 성장유형과 개발 방향/유형 |
| | | | - 지방경제가 부지에 미치는 영향 |
| | | 개발대상이 되는 부지를 중심으로 | - 교통의 흐름(교통량,유형,수단) |
| | 근린분석 |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의 동 | - 근린지역 내 유사개발사업과의 경쟁 |
| | | 태적 변화를 분석 | - 미래의 경쟁가능성 |
| | | | - 인구의 특성(구조, 소득 및 교육 수준) |
| | нлни | | - 지역지구제 |
| | 부지분석 | 대상부지 자체 분석 | - 접근성, 크기와 모양, 지형, 편익시설 |
| | ᄉᄋᄇᄸ | 대상개발사업에 대한 유효수요 추 | - 경쟁력 |
| | 수요분석 | 계 위해 시장 평가 | - 인구분석, 추세분석 |
| | | | - 공실률 및 임대료 추세 |
| | | 기존 공급과 장래 기대되는 공급을 공급분석 포프 | - 정부서비스 유용성 |
| | 공급분석 | | - 건축착공량과 건축허가수 |
| | | 조사 | -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|
| | | | - 건축비용의 추세 및 금융의 유용성 |

(4) 부동산 마케팅

- 1) 부동산 개발
- 2) 부동산 관리의 내용

8. 부동산 가격이론

(1) 부동산가격의 기초

- 1) 시장가치 :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
- 2) 시장가치의 조건
- 대상물건의 시장성, 통상적인 시장, 출품기간의 합리성, 거래의 자연성, 당사자 정통성
- 3)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
- 효용 : 쾌적성, 수익성, 생산성
- 상대적 희소성
- 유효수요
- 이전성
- 4) 부동산가치의 형성요인
- ① 일반적 요인
- 사회적 제요인 : 인구, 가족, 도시형성, 공공시설정비, 교육 및 사회복지, 부동산거래관행 등
- 경제적 제요인 : 저축.소비.투자 수준, 물가.임금.고용 수준, 조세부담 상태, 기술혁신.산업구조, 교통체계
- 행정적 제요인 : 토지제도, 토지이용계획.규제, 건축물구조, 부동산세제, 부동산가격.임료 규제. 공시지가제도
- ② 지역적 요인
- ③ 개별적 제요인

(2) 부동산가치의 제원칙

- 1) 최유효이용의 원칙
- 2) 변동의 원칙
- 3) 예측의 원칙
- 4) 균형의 원칙 : 내부구성요소간의 균형 → 기능적감가 (치유가능.불가능 감가존재)
- 5) 수익체증.체감의 원칙
- 6) 수익배분의 원칙 : 수익방식(잔여법, 수익분석법의 이론적 근거)
- 7) 기여의 원칙
- 8) 적합의 원칙 : 외부환경과의 균형 → 경제적감가 (치유불가능 감가 존재)
- 9) 경쟁의 원칙
- 10) 외부성의 원칙
- 11) 대체의 원칙
- 12) 기회비용의 원칙
- 13) 수요.공급의 원칙

9.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

1)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비교

| 구분 | 지역분석 | 개별분석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대상범위(분석) | 전체, 거시적 | 국지, 미시적 | |
| 선후관계 | 선행 | 후행 | |
| | 표준적 이용 판정방향 제시 | | |
| 목적 | 가격수준 파악 | 최유효이용, 구체적 가격 판정 | |
| | 사례수집 범위 파악과 선택범위 결정 | | |
| | 변동의 원칙 | | |
| 01 *1 | 예측의 원칙 | 균형 | |
| 원칙 | 대체.경쟁의 원칙 | (비교.원가.수익 3방식에서의 활용) | |
| | 적합의 원칙 | | |
| 종별관계 | 종별에 따른 표준적사용과 가격수준 | 유형에 따른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 | |
| 일치여부 | 최유효이용은 개별성으로 인해 표준적사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| | |
| 최유효이용의 피결정성 | 최유효이용은 표준적 사용에 의한 피결정성 | | |
| 피드백 관계 | 양자는 피드백 관계 | 로 서로 영향 미침 | |

2) 지역분석의 대상

| 7 8 | | 대상부동산과 관계 | | 대체. | 특정용도 | 지역의 수 |
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구분 | 포함유무 | 가격 | 거리 | 경쟁관계 | 중심 | 시역의 ㅜ |
| 인근지역 | 0 | 직접적 | 0 | 대상부동산 | 0 | 1 |
| 유사지역 | X | 간접적 | X | 인근지역 | 0 | 多 |

| │ 동일수급권 │ ○ │ 직, 간접적 │ ○ │ 대상부동산 │ X │ □ 1 | 동일수급권 | 0 | | 0 | 대상부동산 | X | 1 |
|--|-------|---|--|---|-------|---|---|
|--|-------|---|--|---|-------|---|---|

10. 감정평가의 방식

(1) 감정평가 3방식 및 6방법

| 3방식 | 가격3연성 | 종류 | 6방법 | 가치임료 | 산식 | 특징 | 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원가 | 비오서 | 가치 | 원가법 | 적산가치 | 재조달원가 - 감가누계액 | 공급 | | | | | |
| 방식 | 비용성 | 임료 | 적산법 | 적산임료 | (기초가액 x <mark>기대이율</mark>) + 필요제경비 | 가격 | | | | | |
| | | 71+1 | 기계시계비그버 | 비즈키비 | 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| | | | | | |
| 비교 | 11714 | | 가치 | 가치 기래사례비교법 | 비준가치 |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 x 면적비교 | 시장 | | | | |
| 방식 | 시장성 | ο I | | 이테니게네그땐 | 이테니게비그땐 | 이디나님비비그램 | ᆯᆝᇬᇛᅹᆀᄞᆲᄧ | | 이데보레비그曲 비즈이크 | 사례임료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| 가격 |
| | | | | 임료 | 임대사례비교법 | 비준임료 |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 x 면적비교 | | | | |
| 수익 | 4.014 | 가치 | 수익환원법 | 수익가치 | 순수익(순영업소득) / <mark>환원이율</mark> | 수요 | | | | | |
| 방식 | 수익성 | 임료 | 수익분석법 | 수익임료 | 순수익 + 필요제경비 | 가격 | | | | | |

<u>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담점과 적용대상물</u>

| 구분 | 비용접근법(원가방식) | 시장접근법(비교방식) | 소득접근법(수익방식) |
|-----------|---|---|---|
| 적용 대상물 | -건물, 구축물, 구조물 -조성지, 매립지 -기계.기구.선박.항공기.건설기계 -재생산,재취득할 수 있은 물건 | -토지,아파트,상가점포 -자동차,염전 -양도 허용된 전화가입권 -시장거래가격 형성되는 물건 | -기업용, 임대용 부동산 -광산,어업권,영업권 -기타 수익용 자산 |
| 장점 | -건물,구축물,기계장치 등 상각 자산에 유용 -공익 용도 부동산 평가에 유용 -비교적 이론적 작업이며 평가 사 주관이 개재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평가가격차도 적다 | -현실성이 있고 설득력 풍부 -부동산 전반에 적용 가능 -3방식중 평가의 중추적 역할 -비수익성 부동산이라도 시장성 이 있을 경우 적용 가능 | -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 -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투기현 상이 적은 곳에서는 참된 가치 반영 -가장 과학적인 방법 |
| 단점 | -재조달원가, 감가상각액 파악 애로 -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한 자산에는 적용 어려움 | -거래사례가 없는 물건에는 적 용 불가 -극단적 호황.불황기 적용 곤란 -사정보정,시점수정 보정률 구 하는데 애로 -평가사 주관적 경험의존도 -사례 수집 어려움 | -비수익성 부동산에 적용 불가 -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면 적용 불가 -선물의 신.구로 인한 평가가격 차이가 없다. -순수익과 환원율 파악이 용이 하지 않음 |

감가수정과 감가상각비교

| 구분 | 감가상각 | 감가수정 |
|----|----------|-------|
| 적용 | 기업회계 | 감정평가 |
| 기준 | 취득(장부)가액 | 재조달원가 |

| 목적 | 기간 내 손익계산, 취득원가 적정배분 | 가격시점의 현존가격의 적정화(복성가격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방법 | 관찰감가법은 반영하지 않음 | 관찰감가법, 내용연수법 병용 |
| IIIOAA | 법정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중시 | 경제적 내용연수 및 장래보존연수 중시 |
| 내용연수 | 실제감가와 일치하지 않음 | 실제감가액 일치함(실제감가) |
| 고려사항 | 시장성은 고려할 필요없음 | 비용성, 수익성,시장성을 고려함 |
| 상각자산 상각자산에만 인정 | | 비상각자산에도 인정(예; 토지) |
| 감가요인 물리적, 기능적 감가 (경제적 감가는 반영X) | | 물리적, 기능적, 경제적 감가 |

⁻ 매년감가액 = (재조달원가-잔존가액)/경제적내용연수

기대이율과 환원이율

| 구분 | 기대이율 | 환원이율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적용 | 적산법 | 수익환원법 |
| 개념 |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| 가격에 대한 수익의 비율 |
| 근거 | 보상지침 49조 ④항 | - |
| | 임대차기간 - 단기 | 내용연수 만료 - 장기 |
| 성격 | 정기예금이율 등 기초 | 순수이율+위험률 |
| | 종별에 따른 차이 X | 종별에 따른 차이 |
| 최유효이용 전제 | 사용계약에 따른 제약의 전제 | 최유효이용을 전제 |
| 종류 | 항상 상각 후, 세공제전 | 상각 전/후, 세공제 전/후 |
| 지가상승시 | 하향조정 X | 하향조정 |
| 종합이율 종합기대이율 개념 X | | 종합환원이율 개념 O |
| 결정 | 대상부동산에 따라 좌우 | 대상부동산에 따라 좌우 |

- 종합환원이율 = (자기자본비율 X 자기자본환원율) + (타인자본비율 X 저당상수)
 - = (지분비율 X 지분환원율) + (저당비율 X 저당상수)
 - = 지분수익률 (저당비율 X 엘우드계수) ± 보유기간 가치 증가율(하락율) X 감채기금계수
- 자본환원율 = 부채감당률 X 저당비율 X 저당상수

<u>환원방법</u>

| | 산식 | 환원방법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단위당 예상임대료 | |
| Х | 임대단위수 | |
| = | 가능조소득(PGI) | → 조소득승수법 (일반적으로 가능조소득을 환원함) |
| - | 공실 및 불량부채 | |
| + | 기타소득 | |
| = | 유효조소득(EGI) | → 유효조소득승수법 |
| - | 영업경비(OE) | |
| = | 순영업소득(NOI) | → 전통적 수익환원법, 잔여법 |
| - | 부채서비스액(DS) | |

| = | 세전현금수지(BTCF) | → 저당지분환원법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- | 영업소득세(TFO) | |
| = | 세후현금수지(ATCF) | → 할인현금수지분석법 |

- [직접법(영구환원법)] 수익가격 = 순수익 / 환원이율
- [직선법] 수익가격 = 순수익(상각전) / (환원이율+상각률) 상각률 = 1 / 잔존내용연수
- [연금법]
- [상환기금법]

11. 감정평가의 절차

(1) 절차

| 1) 기본적 사항의 확정 | 의뢰인, 대상물건, 감정평가 목적, 기준시점, 감정평가조건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2) 처리계획의 수립 | 필요한 자료의 양, 자료출처, 필요 인원수, 시간계획, 수수료산정 등 |
| 3) 대상부동산의 확인 | 물리적 상태, 권리의진정성 등 |
| 4) 자료의 수집과 정리 | 확인자료, 요인자료, 사례자료 |
| 5) 자료의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 | |
| 6)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| 원가/비교/수익방식, 시산가격의 조정 |
| 7)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| |

(2)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(감정평가에 관한 규칙)

| |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|
|----------------|--|
| 토지 | [순서] ① 비교표준지 선정 → ② 시점수정 → ③ 지역요인 비교 → ④ 개별요인 비교 → |
| | ⑤ 그 밖의 요인 보정 |
| | 원가법 적용 |
| 건물 | [순서] ① 재조달원가 산정 → ② 감가수정(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, 물리적.기능적.경제적 |
| | 감가요인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 또는 감가수정 가능) |
| 토지와 건물 일괄 |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(토지가액, 건물가액 구분 표시 가능) |
| |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 |
| 산림 |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적용(단, 소경목림은 원가법 적용 가능) |
| |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|
| 과수원 |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|
| 공장재단 및 |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 |
| 공영제한 꽃 광업재단 |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등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수익환원법 적용 가능 |
| 중요세단 |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|
| | 자동차 :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|
| 자동차 등 | 건설기계 : 원가법 적용 |
| শ্ৰুপ ভ | 선박 : 선체.기관.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 |
| | 항공기 : 원가법 적용 |

| | 본래의 효용가치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가능 |
|------|--|
| EII |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|
| 동산 | 본래의 효용가치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가능 |
| 임대료 | 임대사례비교법 적용 (적용이 곤란한 경우 적산법 적용 가능) |
| | 광업권 : 광업재단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을 빼고 감정평가 |
| 무형자산 | 어업권 : 어장 전체의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어장 현존시설 가액을 뺌 |
| | 영업권.특허권.실용신안권.디자인권.상표권.저작권.전용측선이용권 등은 수익환원법 적용 |
| | 상장주식 : 거래사례비교법 |
| | 비상장주식 : 자산.부채.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 작성 후 기업의 유무형 |
| 유가증권 | 자산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|
| m기당면 | 상장채권 : 거래사례비교법 |
| | 비상장채권 : 수익환원법 |
| | 기업가치 : 수익환원법 |

12. 부동산가격 공시제도

(1) 토지가격 공시제도

1) 표준지공시지가 :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.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

(공시기준일 : 매년 1월 1일)

2) 절차

- ① 표준지 선정
- ② 표준지가격의 조사.평가
- ③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
-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: 표준지 지번, 단위면적당 가격, 면적 및 형상,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
- 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
- ⑥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

3) 평가기준

- 나지상정평가, 적정가격 기준평가, 실제용도 기준평가,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, 개발이익 반영평가, (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)일단지의 평가
- 4) 개별공시지가 : 시.군.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결정.공시
 - 절차 : 개별공시지가 선정 > 지가산정 검증 및 의견청취 >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.감독 > 시.군.구부동산평 가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> 공시 (매년 5월 31일까지)

(2) 주택가격 공시제도

- 1) 표준주택가격 공시 (국토교통부장관)
- 절차 : 표준주택 선정 > 표준주택가격 조사.평가 >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> 표준주택가격 공시 >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> 표준주택가격 조정.공시
- 공시사항: 표준주택 지번, 가격, 대지면적 및 형상, 주택 용도.연면적.구조 및 사용승인일

- 2) 개별주택가격 공시 (시.군.구청장, 매년 4월 30일까지)
- 3) 공동주택가격 공시 (국토교통부장관)
-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.고시하는 경우 : 아파트, 165m² 이상의 연립주택